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232
결재일자	2016.3.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희망나눔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환경국장
협 조			
	예산팀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세출 예산 변경 계획**



**복 지 환 경 국**  
**( 복 지 정 책 과 )**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세출 예산 변경 계획

동별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1 개 요

###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 1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8항
-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 2016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 36,000천원 편성

- 동별 2,400천원 배정(월 200,000원×12개월×15개동 ) : 분기별 지급

## 2 예산변경사유

### ■ 예산 과목 :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실현, 동 복지지원인력(인적 안전망) 운영 강화, 일반보상금(301),기타보상금(11)

### ■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행정자치부)

#### < 301 일반보상금(11. 기타 보상금) >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 ■ 예산 변경 사유

- 동별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동 협의체 특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 현재 기타보상금 예산항목을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으로 변경 · 집행

### 3 예산변경계획

■ 변경 요구액 : 36,000천원

■ 예산 변경 내역

(단위: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변경전	변경후	변경액
변경전	복지 정책과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실현	동복지지원 인력 (인적안전망) 운영강화	일반 보상금 (301)	기타보상금(11) ·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지원	36,000	0	△36,000
변경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내실화	민간 이전 (307)	민간경상사업 보조(02) ·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운영비	11,400	47,400	36,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당초 예산 : 11,400천원

- 실무분과 사업운영비 : 3,300천원
- 실무분과별 사업추진비 : 7,500천원
- 협의체종사자 교육훈련비 : 600천원

### 4 향후 계획

■ 세출 예산 변경 요청(기획예산과)

■ 민간경상 사업 보조 예산 집행 : 2016. 3월중